

집합투자계약 정정사항

1. 대상펀드

- 블랙록 미국달러 하이일드 증권 투자신탁(채권-재간접형)(H)

2. 정정사유
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(2010.06.13. 시행)사항 반영

3. 정정신고서 효력발생일: 2010년 9월 10일

4. 집합투자계약 변경대비표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9장 신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			
제45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(2010.06.13. 시행)사항 반영	<p>제45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p> <p>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.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<u>3.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</u></p>	<p>제45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p> <p>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.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<u>3. 투자신탁(준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u></p>

		<p>② - ③ (생략)</p> <p>④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</p>	<p><u>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u></p> <p>② - ③ (현행과 동일)</p> <p>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</p>
제10장 보칙			
부칙		-	<p>부칙</p> <p><u>제1조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0년 9월 13일에 체결되었으며,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라 증권신고서(일괄신고서)의 효력발생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

끝.